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띄어쓰기 정정(안 제6조)
 -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기타 → 그 밖에
 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→ 제1항에 따른
 - 당해 → 해당

- 호선하며 → 선출하며
- 대하여 → 대해서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 명칭을 정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